

중소기업청 성폭력 근절 및 조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「중소기업청 성폭력 근절 및 조사 지침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최근 공무원 성범죄가 직위 등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대통령께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토록 함에 지시함에 따라 중소기업청 직원간 성폭력 근절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보호와 배려의 도입(안 제3조)

- 성폭력 범죄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 등이 예기치 않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보호 등을 도입

나. 조사 방법 및 시기를 명시(안 제4조)

-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및 친족이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
- 중소기업청에 직접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
- 수사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연관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,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권력형 성폭력 혐의 조사시 상급자를 책임자로 지정(안 제5조)

-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조치 등을 명시하고 혐의자의 상급자를 책임자로 지정토록 규정

3. 의견제출

중소기업청 성폭력 근절 및 조사 지침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감사담당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
(전화 : 042-481-4339, Fax : 042-472-3266)

붙임 중소기업청 성폭력 근절 및 조사 지침 제정(안) 전문 1부

중소기업청 성폭력 근절 및 조사지침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중소기업청 직원(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다)간의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성폭력범죄”라 함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은 조 제2항의 가중처벌 범죄를 말한다.
2. “권력형 성폭력범죄”라 함은 위 1호 중 직급·직책 등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를 말한다.
3. “조사”라 함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은 조 제2항의 가중처벌 범죄혐의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보호와 배려) ①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주소·성명·연령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등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나이,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.

제4조(조사방법 등)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성폭력범죄

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피해자 등에게 반복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변호사 또는 친족·직장동료 등의 조력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. 다만,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진행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5조(권력형 성폭력) ① 권력형 성폭력 혐의가 있다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직(직위해제를 포함한다.)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권력형 성폭력 혐의를 조사할 경우에는 그 조사책임자를 혐의자의 상급자로 임명하여야 한다.

제6조(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)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피해자 및 제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하는 2018.6.30.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(영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